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
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
역량강화, 다문화자녀 교육지원,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
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, 전문 취업
교육,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□ 다만,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
하고 있으나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
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
됩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.

□ 따라서 본 조례 안 제7조의3의 경우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안 제25조의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